

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 운전면허증

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 운전면허증은 **제네바 조약체약국**이 발행하여 동조약이 정한 양식에 합치되는 국제 운전면허증입니다. 제네바조약체약국이 발행한 국제 운전면허증이라 해도 다른 조약(빈 조약 등)에 따른 양식으로 발행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.

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

- 1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이며, 또한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일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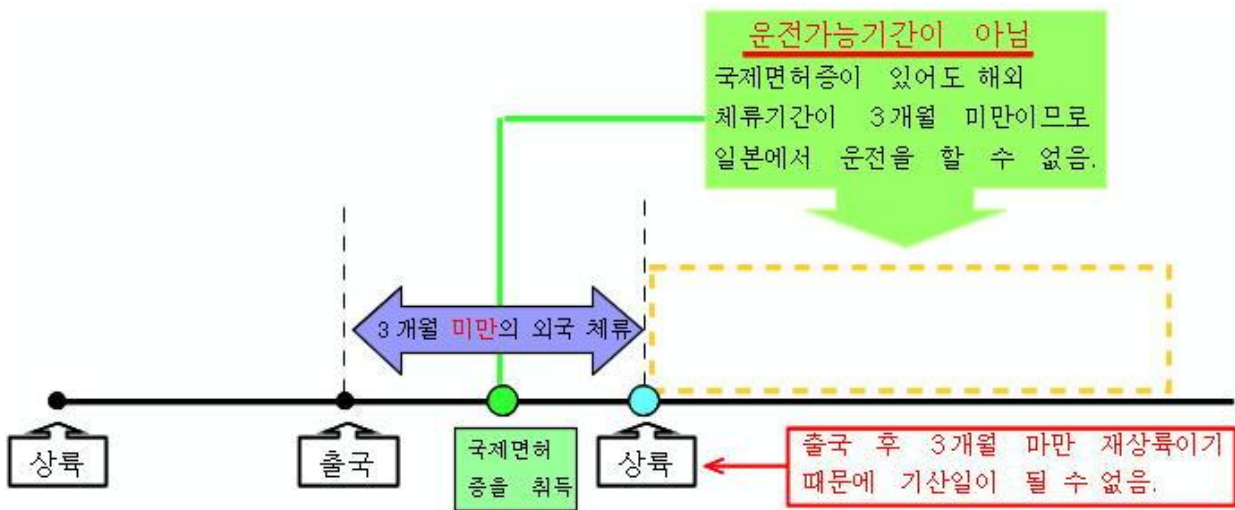


2 도로교통법 10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"3개월 룰" 에 저촉되지 않을 것

◇ 출국일로부터 3개월 미만으로 재상륙한 경우

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 (중·장기 체류 외국인 등) 이 출국확인 또는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부터 외국으로 나갔다가 3개월 미만의 체류중 새로운 국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일본에 다시 상륙한 경우는, 당해 상륙(귀국)일은 국제운전면허증 운전가능기간의 기산일이 될 수 없으므로 일본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.

※난민여행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출국한 분도 같습니다.



◇ 출국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했다가 재상륙한 경우

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 (중·장기 체류 외국인 등) 이 출국확인 또는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부터 외국으로 나갔다가 3개월 이상 체류중 새로운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일본에 다시 상륙했을 경우는, 당해 상륙(귀국)일은 국제운전면허증 운전가능기간의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.

※난민여행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출국한 분도 같습니다.

